

대전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12294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122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합1064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변론 종결 2024. 3. 14.

판결 선고 2024. 4. 25.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합1064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762,3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762,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E, F, G, J, M, N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공동피고들이 불복,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중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E, F, G, J, M,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행의 "피고 A 주식회사"를 "A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행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모두 "이 사건 회사"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9행의 "연 8%에 의하여"를 "위 대위변제금 815,330,592원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11행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C"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0행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E"를 모두 "E"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4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13행 및 그 이하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0면 두 번째 표 전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원고	807,500,000원
T조합	118,130,830원
AC조합	1,300,000,000원
140,500,000원	
AA(임차인)	50,000,000원
AB단체	229,827,256원
피고 C(수익자)	193,533,000원
합계	2,839,491,086원

- 제10면 두 번째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망 D의 적극재산에 대한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망 D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36,288주 중 3,51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식의 가치는 최대 3,164,400,000원에 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망 D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망 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16주를 소유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위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3,164,400,0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은행은

2020. 10. 6. 대전지방법원 AD로 청구금액을 7,758,141,89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 매각허가대금인 61억 원이 완납되어 2022. 11. 16. 배당절차가 종결된 점, ② 2020년도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손익이 '-1,357,044,463원'에 달하였고, 결국 2022. 10. 12. 폐업한 점, ③ 이처럼 2020년도부터 진행된 위 임의경매절차와 이 사건 회사의 2020년도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회사는 2020년경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D의 상속인들인 E, F, G, J, M, N는 대전자정법원 2022누단10562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16주는 망 D의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20. 8. 5.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2면 제12행부터 제13면 밑에서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망 D이 2020.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118,237,642원인 채권자 T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의 변제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먼저 가액배상의 한도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3. 14.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감정가액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해행위시인 2020. 8. 5. 망 D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사실은 다툼 없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그 시가는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제1심 법원의 T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2020.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T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18,237,64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220,000,000원에서 위 118,237,642원을 공제한 101,762,35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3. 14. 기준 원고의 망 D에 대한 채권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22,479,000원 및 그 중 815,330,592원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3. 1. 2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바, 따라서 피고의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리금보다 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101,762,358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봉길

판사장정태

판사이혜성

별지